

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

[도병두 의원 대표발의]

의안번호	2709
------	------

발의일자 : 2025. 5. 29.

발 의 자 : 도병두 의원

이인식 의원

1. 제안이유

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따라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청과 경찰서 간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범죄예방과 신속한 대응 및 지역 특성과 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와 구민 안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기본계획 수립(안 제5조)
-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사업(안 제6조)
- 협력체계 구축(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
- 2)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예산조치

다. 기 타

- 1) 입법예고 : 2025. 5. 30. ~ 2025. 6. 5.

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특성과 금천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자치경찰사무”란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2호 및 「자치경찰사무와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한 규정」 제2조에 따른 사무를 말한다.
2. “자치경찰사무 협력 공무원”이란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지정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(이하 “금천구”라 한다)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(이하 “구민”이라 한다)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.

제5조(기본계획 수립) ① 구청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1.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
2.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
3.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
4. 자치경찰사무 지원 및 협력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
5.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

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할 때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, 금천구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 금천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6조(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사업)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순찰 및 범죄 예방시설 운영·유지관리, 주민참여 범죄예방활동 지원, 안전사고·재해·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
2. 실종예방·대응,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, 성폭력 예방, 아동·여성·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·청소년 분야 사업
3.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·관리, 안전교육·홍보, 통행 제한·허가, 교통법규위반 단속, 어린이통학버스 점검,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분야 사업
4. 가정폭력·아동학대·노인학대·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,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
5. 그 밖에 구청장이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7조(협력체계 구축)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협력 및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금천경찰서, 금천구의회,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, 금천소방서 등(이하 “관계기관”이라 한다)과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회는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치안협의회로 대신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실무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협력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.

④ 관계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,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를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 법령

□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

[시행 2023. 2. 16.] [법률 제19023호, 2022. 11. 15., 일부개정]

제2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□ 「지방자치법」

[시행 2024. 5. 17.] [법률 제19951호, 2024. 1. 9., 타법개정]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. 주민의 복지증진

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
나. 사회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 및 관리

다.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

라. 노인·아동·장애인·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
마.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·운영

바.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

사. 묘지·화장장(火葬場) 및 봉안당의 운영·관리

아.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

자. 청소,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

차.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